

의안 번호	1619	【울산광역시 중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29.(수)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0. 5. 1.(금)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0. 5. 13.(수)

2. 제안설명 요지(주민자치국장 이상찬)

가. 제안이유

한옥체험시설인 어린이당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사용자의 만족도 향상과 평일 시설 사용을 유도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현실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설 사용료 면제 규정 정비 및 감면 규정 신설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면제(안 제7조제3항제1호)
 -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0퍼센트 감면(안 제7조제3항제2호)
 - 관광활성화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 면제 또는 감면(안 제7조제3항제3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기준에 따라 위탁운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안 제11조제2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다.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및 제139조(사용료 징수조례 등)
- 「관광진흥법」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영숙)

- 본 개정 조례안은 한옥체험시설인 어련당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사용자의 만족도 향상과 평일 시설 사용을 유도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현실에 맞게 용어가 정비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근거법규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관광진흥법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